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

○ 정 의

-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

○ 지원대상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, 이직예정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(자체훈련시설 또는 위탁훈련 모두 가능)

○ 지원내용

훈련종류	지 원 내 용	비 고
집체훈련 (집합교육)	$\text{훈련직종별기준단가} \times \text{조정계수} \times \text{훈련시간} \times \text{훈련인원} \times 100\%$ (대규모기업은 80%)	비정규직은 임금(최저임금 전액)지급 ※ 우선지원대상기업 120% 구직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
	훈련수당 : 월20만원 한도	
	기숙사비(식비포함) 및 숙박비 1일 8,500원 (월212,500원) 한도	
현장훈련	훈련비용 : $\text{훈련비용단가} \times \text{훈련시간} \times 40\%$	
원격훈련 (우편, 인터넷)	소요훈련비용 100% (대규모기업은 80%)	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
유급훈련 훈련	임금 : $\text{훈련생 1인당 일 최저임금액} \times \text{훈련일수}$ 훈련비, 식비, 기숙사비 등은 위와 동일	우선지원대상기업 : 최저임금액의 150%

※ 비용지원 한도 :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개산보험료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

○ 지원절차

- 훈련수료 후 3년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

○ 제출서류

- 「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」, 수료증(수료자명부), 계산서 등 훈련비 지출서류, 통장사본